

의안번호	제 2767 호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4. 1.

#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767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4. 1.  
제 출 자: 고성군수

### 1. 개정이유

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을 증액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보조금 상한액을 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: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6921(2024. 2. 15.)]

-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: 기획예산담당관(예산담당)

· 원안가결 [기획예산담당관-3162(2024. 2. 26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295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2. 19. ~ 2024. 3. 11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”를 “제21조의2에 따라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”로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12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2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보조금)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「고성군 주차장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%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200만원 이하로 하며,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          ---- 제21조의2에 따라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-----            ---- 필요한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제8조(보조금) ①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제12조에 따라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300            만원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

**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재정수반요인**

- 가. 관련 조문: 안 제8조(보조금)
- 나. 비용발생 요인: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
- 다. 소요예산: 9,000천원(연간)
  - (보조금) 3,000천원\*3명 = 9,000천원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조례의 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연간 9,000천원으로 예상되며,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**작성자: 도시교통과장 이 주 열**

**참고****관계법령(발췌)**

## □ 주차장법

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·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